

## 방화범죄자에 대한 Criminal Profiling 적용 가능성 고찰

### A Study for the Criminal Profiling of Arsonists

김경옥\*

Kim Kyeong-Ok<sup>†</sup>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2008. 2. 21. 접수 / 2008. 6. 10. 채택)

#### 요 약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최신 과학수사기법으로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경찰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에게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개발된 분야로서,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 방화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및 방화범죄자의 유형 구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 ABSTRACT

Recently, police agency and social scientists' interest in the criminal profiling is increasing. Since serial killings had sharply increased during 1960s in U.S. the American law enforcement agency were pushed to solve those criminal incidents. Therefore, they drew various investigative techniques. But there are no study for the criminal profiling of arsonists. So, this paper reviewed prior studies on the arsonist's type and suggested how to apply this kind of basic information for investigating arson cases in Korea.

**Keywords :** Police agency, Criminal profiling, Criminal incidents, Investigative techniques

## 1. 서 설

방화는 살인·강간·강도 및 연쇄 범죄와 더불어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sup>1)</sup> 대상 범죄에 해당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방화 범죄자의 범행 원인, 동기, 심리학적 기제(psychological mechanism), 정신의학적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Bohnert, Ropohl, Pollak, 1999; Fritzson, 2001;

Barnett, Richter, Renneberg, 1999; Kocsis, Cooksey, 2002).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범죄 유형별 접근으로의 연구는 살인 범죄의 프로파일링을 제외하고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화 범죄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공식통계 자료를 통한 방화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후 외국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다 심층적인 방화범죄 프로파일링의 가능성 및 접근 모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E-mail : kokim2005@yahoo.co.kr

1) Criminal Profiling은 Psychological Profiling, Investigative Profiling, Crime Scene Analysis 등 매우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범죄자 프로파일링,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범죄현장분석 등의 용어로 해석하고 있으나 국문으로의 해석을 통하여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문에서 Criminal Profiling의 개념적 정의를 다룰 것이나 문맥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 후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통일하여 기재하고자 한다. Criminal Profiling의 개념은 본론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방화범죄의 개념 및 현황

### 2.1. 방화범죄의 개념

우리나라에는 작년 한 해동안 약 5만여건의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소방방재청, 2007). 화재사건의 발생

원인은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방화 및 방화의심 등으로 구분하여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 중에서 고의적으로 화재를 발생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방화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방화의 법률적 정의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燬)하는 것'으로서 실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현행 형법에서는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는 등의 준방화죄도 포함하고 있다(박형민, 2004). 방화는 살인, 강도, 강간과 더불어 강력범죄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되고 있다(성한기·박순진, 2003).

## 2.2 방화범죄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2.2.1. 발생 현황 분석

본 내용에서는 공식통계자료를 통하여 방화범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식통계자료를 통하여도 범죄의 일반적 특성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식통계자료의 적절한 사용은 프로파일링을 위하여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다만, 공식통계는 통계의 집계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의 전체 화재발생 건수 내에서의 방화 현황과 경찰에서 방화로 집계한 통계자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오류를 다소 줄여보자 한다.

먼저, 소방방재청(2007)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동안 47,76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006년 31,778건에 비하여 15,982건(50.3%)이 증가한 수치이다. 2007년 12월 중에는 일일평균 122.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표 1과 2에서 보여지듯이 화재사건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매우 큰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방화의 발생건수를 살펴볼 때, 소방방재청의 자료와 경찰청의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는 방화 및 방화의심의 구분을 방화가능성이 있는 분류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경찰청의 자료는 명확하게 방화로 인지

Table 1. 화재발생 현황

| 화재건수   | 인명피해 (명) |     |       | 재산피해<br>(백만원) |  |
|--------|----------|-----|-------|---------------|--|
|        | 계        | 사망  | 부상    |               |  |
|        |          |     |       |               |  |
| 47,760 | 2,184    | 457 | 1,727 | 259,763       |  |

출처: 소방방재청. 2007.

Table 2. 범죄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       | 계      | 전기적<br>요인 | 기계적<br>요인 | 가스<br>누출 | 화학적<br>요인 | 교통<br>사고 | 부주의    | 기타<br>실화 | 자연적<br>요인 | 방화<br>의심 | 미상    | 2007년 1월 ~ 12월 |
|-------|--------|-----------|-----------|----------|-----------|----------|--------|----------|-----------|----------|-------|----------------|
|       |        |           |           |          |           |          |        |          |           |          |       |                |
| 건수    | 47,760 | 10,533    | 3,386     | 249      | 264       | 682      | 22,435 | 2,139    | 263       | 358      | 1,637 | 5,814          |
| 비율(%) | 100    | 22.1      | 7.1       | 0.5      | 0.6       | 1.4      | 47     | 4.5      | 0.6       | 0.7      | 3.4   | 12             |

출처: 소방방재청. 2007.

Table 3. 범죄발생 및 검거별 죄종현황

| 죄명 | 발생건수   | 발생율  | 검거인원   |        |     | 2007년 1월 ~ 12월 |
|----|--------|------|--------|--------|-----|----------------|
|    |        |      | 계      | 남      | 여   |                |
| 살인 | 1,111  | 7%   | 1,312  | 1,158  | 154 |                |
| 강도 | 4,435  | 28%  | 5,480  | 5,011  | 469 |                |
| 강간 | 8,733  | 55%  | 8,346  | 8,191  | 155 |                |
| 방화 | 1,697  | 10%  | 1,558  | 1,373  | 185 |                |
| 계  | 15,976 | 100% | 16,696 | 15,733 | 963 |                |

출처: 경찰청. 2007.

Table 4. 방화범죄 발생시간

| 계     | 침야<br>(00:00~04:00) | 새벽<br>(04:00~07:00) | 오전<br>(07:00~12:00) | 오후<br>(12:00~18:00) | 초저녁<br>(18:00~20:00) | 밤<br>(20:00~24:00) | 미상 |
|-------|---------------------|---------------------|---------------------|---------------------|----------------------|--------------------|----|
| 1,731 | 467                 | 182                 | 208                 | 307                 | 138                  | 429                | -  |
| 100%  | 26%                 | 11%                 | 12%                 | 18%                 | 8%                   | 25%                | -  |

출처: 경찰청. 2006.

된 경우이나, 소방에서 집계한 자료 중에도 경찰에서 인지하지 못한 방화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두 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방화의 발생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2와 3의 수치를 고려할 때 2007년 한해 동안 약 1,700여건의 방화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약 4%에 해당한다. 강력범죄의 발생현황을 볼 때, 방화는 1,697건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방화범죄는 주로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20시부터 04시까지가 약 50%로서 절반 이상의 방화가 야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2.2 방화범죄자 특성

표 5에 의하면, 방화범죄자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범행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재미추구를 위해 범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화범은 자신의 내적 욕구 불만족의 표출을 위해서 방화를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able 5. 방화범죄자 공범수

| 계     | 단독    | 2명 | 3명 | 4명 | 5명 | 10명이하 | 20명이하 | 기타 |
|-------|-------|----|----|----|----|-------|-------|----|
| 1,503 | 1,432 | 48 | 11 | 4  | 2  | 1     | 1     | 4  |
| 100   | 96%   | 4% | 0% | 0% | 0% | 0%    | 0%    | 0% |

출처: 경찰청, 2006.

Table 6. 방화범죄자 직업별

| 계     | 전문직 |     |      |     |     |      |     |       |    | 소계 |
|-------|-----|-----|------|-----|-----|------|-----|-------|----|----|
|       | 의사  | 변호사 | 교수   | 종교가 | 언론인 | 예술인  | 공무원 | 기타    |    |    |
| 1,486 | 2   | -   | -    | 9   | 1   | 1    | 3   | 10    | 26 |    |
|       | 0%  | -   | -    | 1%  | 0%  | 0%   | 0%  | 1%    | 2% |    |
| 기타    |     |     |      |     |     |      |     |       |    |    |
| 학생    | 주부  | 전의경 | 공익요원 | 법인  | 부직자 | 자영업  | 미상  | 소계    |    |    |
| 125   | 23  | 1   | 3    | -   | 572 | 288  | 31  | 1,043 |    |    |
| 8%    | 2%  | 0%  | 0%   | -   | 39% | 19%  | 2%  | 70%   |    |    |
| 파고용자  |     |     |      |     |     |      |     |       |    |    |
| 사무원   | 기술자 | 점원  | 운전사  | 회사원 | 유홍업 | 일용노동 | 기타  |       |    |    |
| 2     | 12  | 21  | 52   | 61  | 15  | 184  | 70  | 417   |    |    |
| 0%    | 1%  | 1%  | 4%   | 4%  | 1%  | 12%  | 5%  | 28%   |    |    |

Table 7. 방화범죄자 범행시 전과

| 계     | 전과    |     |     |     |     |    |    |    |    | 없음  |
|-------|-------|-----|-----|-----|-----|----|----|----|----|-----|
|       | 소계    | 1범  | 2범  | 3범  | 4범  | 5범 | 6범 | 7범 | 8범 |     |
| 1,486 | 1,035 | 191 | 149 | 123 | 104 | 75 | 76 | 53 | 60 | 204 |
| 100%  | 70%   | 13% | 10% | 8%  | 7%  | 5% | 5% | 4% | 4% | 30% |

출처: 경찰청, 2006.

Table 8. 방화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계     | 남     | 여   | 정상  |     |    | 정신이상 |     |    | 월경<br>이상 |
|-------|-------|-----|-----|-----|----|------|-----|----|----------|
|       |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 1,486 | 1,343 | 143 | 735 | 659 | 76 | 35   | 24  | 11 |          |
| 100%  | 90%   | 10% | 49% | 44% | 5% | 3%   | 2%  | 1% |          |
| 정신박약  |       |     |     |     |    |      |     |    |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 5     | 4     | 1   | 36  | 32  | 4  | 675  | 624 | 51 | -        |
| 0%    | 0%    | 0%  | 2%  | 2%  | 0% | 46%  | 43% | 3% | -        |

출처: 경찰청, 2006.

공범과 같이 범행하기 보다는 개인이 범행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표 6에서는 방화범죄자의 직업을 보여주고 있다. 방화범죄자의 39%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이나 일용직 노동자도 각각 19%,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자들은 대부분 사회 저소득계층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특성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방화범죄자는 70% 정도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9범 이상인 범죄자도 14% 정도로 나타나 높은 재범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아닌 이종 전과도 포함된 수치이므로 방화범이 다른 범죄도 다양하게 행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방화범죄는 음주와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표 8의 통계에서도 46%정도가 음주 후 방화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 정도의 정신이상 방화범들이 있는데, 방화광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정신이상에 의한 방화는 연쇄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통계상으로는 미비한 수치이지만 위험성이 높은 집단군으로 보여진다.

### 3. 방화범죄의 심각성 및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

#### 3.1 방화범죄의 심각성

대구지하철 참사 생존자의 상당수가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사고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명대의 대 김정범 교수팀은 “지난 2년간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생존자 가운데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불안, 적응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의하면 생존자 129명 가운데 절반인 64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며, 불안증상이 34명(26%), 적응장애 9명(7%), 우울증 호소 2명(1.5%) 등 생존자의 84%인 109명이 2년이 지나도록 사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사고 휴유증으로 지하철이나 지하도 진입을 기피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4. 12. 22.).

방화는 살인과 비교했을 때 범죄의 결과가 더욱 심각할 수 있는 범죄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위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편 방화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도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의 방화범죄 전문 수사관인 Avato<sup>2)</sup>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방화와 살인을 비교한다면, 방화가 실질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만약 내가 총으로 누군가를 살해하고자 한다면, 죽이고자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까지도 죽일 위험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다만 총알이 있을 때 까지만 위험을 초래 할 뿐이다. 불은 탈 수 있는 연료와 산소가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계속 꺼지지 않고 탈 수 있다. 총은 총알이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불은 소화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라도 계속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Faith, 1999; Stewart, 2006 재인용).”

방화 범죄의 또 다른 심각성은 명확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죄 선고를 내리기 어려운 범죄라는 점이다. 방화는 범죄가 진행되면서 모든 단서가 소실되는 범죄이다(Stewart, 2006). 즉, 불 자체로 인하여 1차적으로 범죄의 단서가 없어지고, 불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현장 보존과 단서가 파괴된다. 따라서 방화 범죄는 수사 뿐만 아니라 프로파일링에서도 어려운 범죄 유형이며, 방화 범죄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의한 수사 및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3.2 방화 범죄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

##### 3.2.1.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은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룬 바 있으므로(곽대경, 2001; 권창국, 2002; 박광배, 2001; 임준태, 2003; 김경우·이수정, 2005) 본 논문에서는 방화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의 유형 및 무형의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다른 범죄들과의 유사성을 밝힘으로써 수사선을 설정하고 용의자를 파악해내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정의된다(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Pinizzotto & Finkel, 1990; Rossomo, 2000).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근본적으로 현장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즉, 현장에서 감식을 통하여 수집되는 모든 증거를, 피해자의 피해 상황, 목격자의 진술 등 발생 현장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들이 프로파일링을 위한 분석 자료가 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특성이 범죄 상황에서도 표출

2) Steve Avato는 The U. S.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ATF)의 특수요원으로 많은 방화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 수사관이다(Stewart, 2006).

된다는 심리학적 전제에서 출발한 수사기법으로서 초기 FBI의 체계적/비체계적 프로파일링 접근법에서는 주로 성적인 이상동기 및 정신병리적 징후가 존재하는 성적 살인, 강간, 연쇄살인, 시체훼손, 시체성애 등의 범죄에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재산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 인질협상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되기도 한다(Holmes & Holmes, 1996).

### 3.2.2 방화범죄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

모든 것이 소훼되어 재만 남아있는 현장에서 범죄자의 행동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한 숭례문 방화사건을 비롯하여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 이상동기에 의한 방화사건 및 2008년 3월 겹거된 마포 일대 연쇄방화 사건 등 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방화사건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물이 거의 훼손된 현장에서 어떻게 범인을 추적해나갈 것인가?

방화범죄는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불로 인한 현장 훼손과 진화과정에서 현장 보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행동 특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범인의 M.O.<sup>3)</sup>와 Signature<sup>4)</sup>에 의해 범죄자의 행동 특징을 분석해나가는 프로파일링의 대상범죄로서 적합한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죄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주요 대상 범죄로 고려되는데 그 이유는 연쇄성 및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의 공간 이동성, 대상물의 선택, 방화 방법, 시간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범인의 성향을 분석해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 M.O.는 *Modus Operandi*의 약자로서, 사전적으로 절차, 작업 방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에서의 M.O.는 범죄자의 범행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범행수법'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나, 의미의 전달에서의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어를 사용하였다(김경옥·이수정, 2005).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행동은 '범인의 성격은 행동에 일관되게 반영된다'라는 전제에 근거하므로 행동 방식에 해당하는 M.O.는 사건이 반복될지라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건의 연쇄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만, M.O.는 학습된 행동으로서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여 범죄경력이 쌓이면서 수정되고 재형성된다는 특성이 있다.

4) Signature는 사전적으로 '서명, 특징'이라는 뜻으로 범인이 범행 과정에서 보이는 변하지 않는 그 범죄자만의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전적인 의미인 '자신만의 고유한 사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인이 물리적 형태로 보여지기 보다는 행동 상의 특성으로 반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Signature는 M.O.와는 달리 수정되거나 재형성되지 않고 영속적으로 유지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동기가 불명확하고 수사의 방향성 설정이 어려운 강력 및 연쇄성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범죄자의 성향 및 행동 특성을 제시해줌으로써 수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방화범죄의 수사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4. 방화 범죄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접근 모델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최근 외국의 연구들은 주로 정신건강이나 병인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정신의학 및 심리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방화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최초 연구는 FBI의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의 연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행동과학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교도소에 수감된 연쇄살인범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강력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FBI의 범죄자 유형 분류는 체계적/비체계적 범죄자에 근거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고전적 기법으로서 살인, 방화, 성범죄, 연쇄 범죄 등에 대한 범죄자 분류 및 강력 범죄자의 M.O.와 Signature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사례, 수사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FBI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이 소개된 이후 최근까지 미국, 영국 및 캐나다 등에서 초기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발전시켜 최근에는 축적된 D/B에 대한 통계학적 접근을 통하여 더욱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을 도입하여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BI를 비롯하여 외국에서 방화범죄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국내의 방화범 분류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 4.1 범죄 동기론적 유형 분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화 범죄자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는 FBI의 행동과학부에서 수행된 것으로서, FBI에서는 범죄의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방화범을 분류하였다. FBI에서는 범행 동기를 기준으로 범죄 행동과 범죄자 특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동기에 의한 유형 분류는 가장 일반적인 방화범 유형 분류로서 국내 연구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FBI의 동기적 유형 분류 체계가 비판 받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한 가지는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FBI의 동기적 유형론은 1978년에 이루어진 교도소에 수감된 연쇄 살인범들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분류된 것으로서 주로 성적 살인범들에 대한 유형 분류가 목적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체계적/비체계적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비록 체계적/비체계적 유형론이 성적 살인범죄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나 Douglas 등(1992)은 이러한 개념을 방화범죄자에도 일반화하여 적용하였다(Kocsis & Cooksey, 2002). Kocsis 등(1998)의 연구는 FBI의 이분법적 유형론이 방화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방화범죄의 동기 및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범죄의 동기는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론된 동기로 범죄자 유형

을 분류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의 외국 연구에서는 동기에 의한 방화범의 유형 분류 보다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범죄자의 행동에서의 차이를 근거로 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Canter & Heritage, 1989; Kocsis, 1998; Kocsis & Cooksey, 2002).

#### 4.2 심리학적 평가에 의한 유형 분류

방화범죄자 중에서도 방화광에 대해서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sup>5)</sup>에서도 진단되어있을 정

Table 9. 방화범의 동기에 의한 유형 분류

| 방화범 유형  | 내 용   |
|---|---|
| 손괴방화범<br>(vandalism-motivated arson)            | 계획적이고 짓궂은 장난 (willful & malicious mischief) |
|   | 동료/집단 압박 (peer/group pressure)              |
|   | 기타 (other)                                  |
| 흥분 방화범<br>(excitement-motivated arson)          | 스릴추구 (thrill seeker)                        |
|   | 관심추구 (attention seeker)                     |
|   | 인정(영웅) (recognition/hero)                   |
|   | 성적 도착 (sexual perversion)                   |
|   | 기타 (other)                                  |
| 보복 방화범<br>(revenge-motivated arson)             | 개인적인 보복 (personal retaliation)              |
|   | 사회적 보복 (societal retaliation)               |
|   | 제도적 보복 (institutional retaliation)          |
|   | 집단 보복 (group retaliation)                   |
|   | 기타 (other)                                  |
| 범죄온닉 방화범<br>(crime-concealment-motivated arson) | 살인 (murder)                                 |
|   | 자살 (suicide)                                |
|   | 주거침입 (breaking & entering)                  |
|   | 절도 (larceny)                                |
|   | 기타 (other)                                  |
| 이익 방화범<br>(profit-motivated arson)              | 사기 (fraud)                                  |
|   | 고용 (employment)                             |
|   | 물품 제거 (parcel clearance)                    |
|   | 경쟁 (competition)                            |
|   | 기타 (other)                                  |
| 극단주의 방화범<br>(extremist-motivated arson)         | 테러리즘 (terrorism)                            |
|   | 차별 (discrimination)                         |
|   | 폭동/민족 소동 (riots/civil disturbance)          |
|   | 기타 (other)                                  |
| 연쇄 방화<br>(serial arson)                         | 연속 방화 (spree arson)                         |
|   | 다중 방화 (mass arson)                          |
| 연쇄 폭파 (serial bomb)                             |   |

출처 : 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5) DSM-IV에 의하면, 병적 방화는 한번 이상의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방화로서 방화 이전에 긴장감이나 징서적 홍분을 경험하며 불과 연관된 상황에 대해서 매혹, 흥미, 호기심 등을 동반하게 된다.

도로 정신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방화범죄자들은 알콜이나 약물, 정신지체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정신분열로 진단되기도 한다. 방화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조사한 Bradford(1982)에 의하면, 방화 범들은 다른 범죄자 집단에 비해서 연령이 대체로 낮고 정신장애 및 성격장애의 비율이 높으며 직업적 지위나 학력이 낮은 특성이 있다(성한기·박순진, 2003 재인용). 대구 지하철 방화범의 경우 기분부전증으로 진단되었는데, 기분부전증이란 경미한 우울 상태로서 적어도 2년 이상 우울한 기분이 없는 날보다 우울한 날이 더 많으면서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주요 우울증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뇌출증 발병 후 타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나타나 ‘뇌출증 후 분노나 공격의 통제불능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성한기·박순진, 2003).

이와 같이 방화범죄자들은 망상이나 환청 등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에서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원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심리학적 평가가 유형 분류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방화범죄자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내적 불만족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리학적 평가가 다른 범죄자 집단에서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4.3 공간 이동성에 의한 유형 분류

방화범죄자의 공간 이동성에 의한 분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연쇄 범죄자의 경우에 공간적 이동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이것은 방화범죄자 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방화범죄자의 공간 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환경범죄학 및 환경 심리학 분야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일상 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그 배경으로 한다. 그 내용은 범죄자의 공간 이동성을 ‘공간에 대한 친숙성(familiarity)’과 ‘자신의 생활공간(activity space)’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범죄를 행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장소 즉, 자신의 생활 공간 내의 장소이거나 혹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장소라는 점이다(Fritzon, 2001). 범죄와 같은 긴장감이 높은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통제감이 높은 장소에서 환경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다. 범죄자는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범죄로 인하여 얻게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범행 장소의 선택도 고도로 긴장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단, 범죄자의 공간적 이동성이 안정적인가 이동적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완충지대(buffer zone)’의 개념이다. 자신의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지역을 완충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범죄를 행한다면 이동적인 범죄자 유형의 가능성이 높으며, 완충지대 보다는 자신의 생활공간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더욱 느끼는 범죄자일 경우에는 안정적인 유형의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방화범죄자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이동성을 보이는 ‘회귀적 범죄자 유형’인 경우가 많다. 박철현(2003)에 의하면, 방화범은 거주지와 멀어질 수록 방화가 줄어드는 거리감퇴현상(distance decay)이 나타나며, 자신만의 안락한 공간(comfort zone)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20.3%가 자신의 집에서 0.5km 내에서 방화를 하며, 50%는 1.6km, 70%는 3.2km 내에서 방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모든 방화범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방화범죄자의 공간적 이동성이 방화범죄의 프로파일링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국내의 방화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수행된 방화범죄자에 대한 유형 분석 연구를 검토하여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수사 실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기준 방화 사건들에 대한 사후 분석 및 방화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미 방화범죄의 경우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선형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으므로(Bohnert, Ropohl, Pollak, 1999; Fritzon, 2001; Barnett, Richter, Renneberg, 1999; Kocsis, Cooksey, 2002), 우리나라에서는 방화범죄의 프로파일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보다는 이를 위하여 방화 범죄의 D/B 구축 및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방화범죄 프로파일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쇄성 방화사건 및 이상동기에 의한 방화사건에 대한 자료 정리·분석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 노력을 근거로 발생 사건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화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광대경.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1-23. 2001.
2. 권창국.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통권 제52호. 247-280. 2002.
3. 김경옥·이수정. 2005.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권 1호. 129-148.
4. 경찰청. 범죄통계. 2006.
5. 박광배. 범죄자 유형파악.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자료집. 33-54. 2001.
6. 박철현.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 동래연쇄방화사건의 사례.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61-92. 2003.
7. 박형민. 방화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4.
8. 성한기·박순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9. 소방방재청. 2007 및 2007. 12월 화재분석.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소방방재청 홈페이지).
10. 임준태. 강력범죄에서의 범인상 추정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9집. 치안연구소. 149-321. 2003.
11. Barnett Winfried, Richter Paul, Renneberg Babette. Repeated Arson: Data from Criminal Record.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01. 49-54. 1999.
12. Bohnert M., Ropohl D., Pollak S. Clinical Findings in the Medico-Legal Investigation of Arsonists. Journal of Clinical Forensic Medicine. 6. 145-150. 1999.
13. Canter D. & Heritage R. Multivariate Model of Sexual Offence Behaviour: Developments in Offender Profiling: Vol. 1.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 185-212. 1989.
14. Douglas John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4. 401-421. 1986.
15. Douglas J. E., Burgess A. W., Burgess A. G. & Ressler R. K. Crime Classification Manual. NewYork: Simon & Schuster. 1992.
16. Faith Nicholas. Blaze: The Forensics of Fire. New York: St. Martin's. 1999.
17. Fritzon Katarina.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 Travelled and Motivational Aspects of Firesetting Behaviou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45-60. 2001.
18. Holmes R. M. & Holmes S. T. Profiling Violent Crimes : An Investigative Tool. U.S: Sage Publication. 1996.
19. Kocsis Richard N. & Cooksey Ray W.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rial Arson Cr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 (6). 631-656. 2002.
20. Kocsis R. N., Irwin H. J. & Hayes A. F. Organised & Disorganised Behavior Syndromes in arsonist: A Validation Study of a Psychological Profiling Concept.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5. 117.-130. 1998.
21. Pinizzotto A. J. & Finkel N. J.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 An Outcome and Process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14. 215-233. 1990.
22. Rossmo D. K. Geographic Profiling. Boca Raton. FL: CRC Press. 2000.
23. Stewart Gail., B. Arson. New York: Thomson Gale. 2006.